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-128

제출년월일 : 2026. 11. 16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단독·다세대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,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범위 확대(안 제1조) 및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체화 (안 제5조, 제6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4조(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)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10. 15.~2026. 11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해당 없음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마포구 내”를 “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”으로, “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”를 “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”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비용의 지원)”을 “(지원대상 및 내용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, 지원

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(단독주택이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의 청소, 안전, 주차,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관리소를 설치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관리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원 내용 등)”을 “(지원금액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6조”를 “제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----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----------.
제5조(지원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. 다만,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,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	<삭 제>
제6조(비용의 지원)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	제6조(지원대상 및 내용) ① -----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「건

각 호의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우 ---. 다만, 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,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<신 설>	③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(단독주택이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의 청소, 안전, 주차, 시설유지 관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관리소를 설치하고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관리소 근무자를 채용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제7조(지원 내용 등) 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(이	제7조(지원금액 등) ① ------- 제6조제1항----------

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은 소규모 공동주택 당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②·③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(안 제6조)

○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의 관리소 설치 및 관리소 근무자 채용·관리 (안 제6조제3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건축과 현예담
연 락 처	02-3153-9423